

# 대법원 2024무689 집행정지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2024. 2. 6. '의대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할 것'이라고 발표(이하 '이 사건 증원발표')하고,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이 2024. 3. 20. '2025학년도 전체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각 대학별로 배정'(이하 '이 사건 증원배정')하자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재학생, 의대 입학 수험생들로 구성된 신청인들이 이 사건 증원발표 및 증원배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한 사안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이 사건 증원발표 및 이 사건 증원배정에 대한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하였음(대법원 2024. 6. 19. 자 2024무 689 결정)

- ①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이 사건 증원발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법함
- ② 신청인들 중 의대 재학생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나,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지 않음
- ③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증원배정 처분이 집행되어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이 사건 증원배정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음

## 1. 사안의 개요

### ▣ 신청인들의 지위

- 신청인 1~4 ⇒ 의대 교수
- 신청인 5~7 ⇒ 전공의
- 신청인 8~12 ⇒ 의대 재학생
- 신청인 13~18 ⇒ 의대 입학 희망 수험생

### ▣ 처분 및 이 사건 신청의 경위

- 2024. 2. 6.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대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할 것'이라고 발표(이하 '**이 사건 증원발표**')
- 2024. 3. 20.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이 '2025학년도 전체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각 대학별로 배정'(이하 '**이 사건 증원배정**')
- 2024. 3. 19. 신청인들은 이 사건 증원발표 및 이 사건 증원배정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함

## 2. 소송의 경과

### 가. 제1심 ⇨ 신청 각하

- ▣ 신청인들에게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함

### 나. 원심 ⇨ 의대 재학생 신청인들 기각, 나머지 신청인들 각하

#### ▣ 대상적격

- 이 사건 증원발표와 증원배정은,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전체로서 모두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음

#### ■ 신청인적격

-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에게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고, 나머지 신청인들에게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음

#### ■ 실체요건

- 의대 재학 중인 신청인들에게는 집행정지를 구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나, 집행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고,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가 허용될 수 없음

### 3. 대법원의 판단

#### 가. 쟁점

- ❶ 이 사건 증원발표가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대상 적격의 문제]
- ❷ 신청인들에게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신청인 적격의 문제]
- ❸ 이 사건에서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실체요건의 문제]

#### 나. 판단 결과 ➡ 재항고기각

- 원심결정 중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이 사건 증원발표의 대상 적격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나, 이를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지 않음(대법원 1995. 6. 21. 자 95두26 결정 참조)
- 나머지 원심판단에는 잘못이 없음

#### 다. 구체적 판단 이유

- ❶ 이 사건 증원발표의 대상 적격 ➡ 부정

- 이 사건 증원발표는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의 모집정원을 정하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과 거쳐야 하는 협의(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참조)의 내용을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한 것에 불과하고,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거친 협의의 내용에 구속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 실제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법적 효과는 이 사건 증원배정을 통해 비로소 외부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원발표를 이 사건 증원배정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도 없음
- 이 사건 증원발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증원발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일부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나, 신청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지 않음(대법원 1995. 6. 21. 자 95 두26 결정 등 참조)

▣ ②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 ➡ 긍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각 대학은 의료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에 관하여는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는데, 이에 따라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의 학생정원을 정할 때에도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를 고려하여야 함
-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의하면, 학생의 수에 따라서 의과대학이 갖추어야 할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의 면적과 의과대학이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수가 정해지고, 의과대학이 학생정원을 증원할 때에도 그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정한 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고, 나아가 의대 재학생들에 대하여 헌법 제31조 제1항이 정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라 해석됨

▣ ③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 ➡ 부정

- 나머지 신청인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증원배정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④ 집행정지의 실체요건 ➡ 집행정지 불허

- 이 사건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함
- 의과대학의 교육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2025학년도에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 사건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함